

##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### 검 토 보 고 서

#### 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2년 1월 23일

나. 회부일자 : 2002년 1월 23일

#### 3. 제안 이유

- 농·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매입자금 지원과 융자금의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으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,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

#### 4. 주요 골자

##### ◦ 개발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및 융자 확대

- 개발기금 대상사업중 농수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사업도 지원대상 사업에 포함
-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유통안정을 위해 3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도록 함

- 운용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
  - 이율 : 연 5% ⇒ 연 3%
  - 상환기간 : 1년만기 일시상환 ⇒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함
- 일부 규정 현실에 맞게 조정
  - 조문 규정중 "운영" ⇒ "운용"으로 하고
  -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⇒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운용관리특별회계로 함

## 5. 검토 의견

-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안은 농·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매입자금 지원과 융자금의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으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.
-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융자금의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은 농가의 어려움과 각종 금리가 저금리시대로 가는 추세를 볼 때 시의 적절한 조치라 사료되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